

야 할 것이며 사회적, 구조적 약자 차별에 대한 사회 구조적 관점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런 경향이다.

인터넷의 새로운 매체적 특성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검열'의 사전적 의미에도 도전하고 있다. 국경도 없는 인터넷의 수많은 콘텐츠를 '사전에' 빠짐없이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무엇이 검열인가"의 문제는 비록 사후에 이루어지는 규제라 하더라도 그 '효과적' 측면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⁴¹⁾ 이런 점에서 지금 인터넷의 내용규제가 기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행정적 규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인터넷만큼 진보한 '검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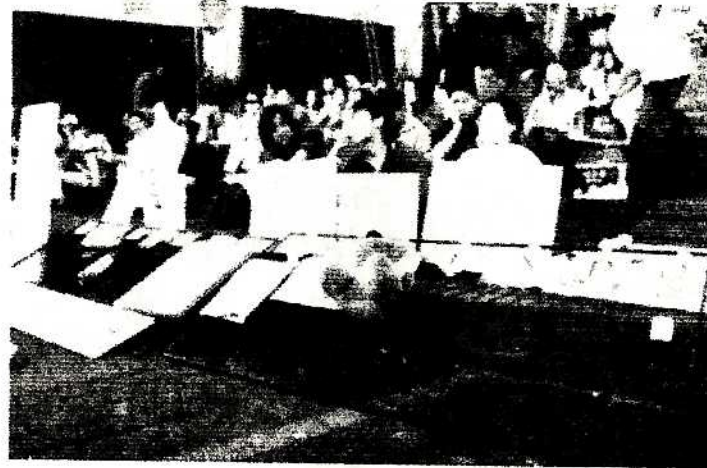
3. '불온'한 정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인터넷 내용을 규제 해온 기준으로는 '불법', '불온', '유해'(청소년유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할 때 '불법으로서의 음란'과 '불온으로서의 음란'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음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불온' 정보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국가적'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하는 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이라거나 '불건전'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41) 황성기(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2000. 11) 한국헌법학회.



컴퓨터 통신은 1980년대 말부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상당히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큰 매력으로 느낀 이용자에게 의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것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이적표현물'을 이유로 '불온한' 통신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다. 예를 들어 1994년에는 서적으로도 출판된 바 있는 『붉은산 검은피』와 『공산당 선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천리안의 '현철동' 동호회 회원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다. 이에 정부는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왔고 1996년에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법정 기구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 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위헌 소지가 당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첫째, 불온정보를 규정하는 기준의 포괄성과 모호성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둘째, 소명권이나 구제절차가 없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사후적이지만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헌 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위 95헌가16결정).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위헌적인 검열 기구라는



© Photo. 대자본 김규민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상의 점은 이미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것이다. 또한 비록 정부 예산에서 직접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정은 정부에서 지급 받으며 그 한해 규모가 무려 41억에 이른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일단 그 주요 업무인 '불온통신의 단속'은 그 개념의 자의성과 포괄성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그 주요 업무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도 함께 맡고 있는데, 이미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불온'과 '유해'의 개념을, 그도 즉자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있다.

지난 6월 개인 홈페이지의 누드 그림이 문제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불온'으로 규정되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가 복구된 후 며칠 간격으로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의 경우 '불온'하다는 판정을 받아 폐쇄되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기구가 재심의하면서 '여전히 불온하다'는 판정을 하여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의 경우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폐쇄조치가 내려져 P2P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의 현실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불렀다.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커뮤니티들을 폐쇄 조치하여 많은 동성애·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들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불온통신'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일이다.

4. 통신질서확립법 논란

특히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내용 통제가 시도되었다. 또한 그 방식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인터넷내용등급제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많은 장치를 두고 있었다. 불량이용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자들이 공유하고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가혹한 처벌을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의 거처야 할 주요한 사안들이 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인터넷내용등급제였다. 애초 원안에서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이들의 단일한 기준이 학교·도서관 등에서 강제되도록 하였었다.

정부는 8월 19일 법 원안을 최초로 수정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까지 이 법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특히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이어 8월부터 네티즌들이 온라인 시위 등 이 법에 대한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조항들이 대폭 축소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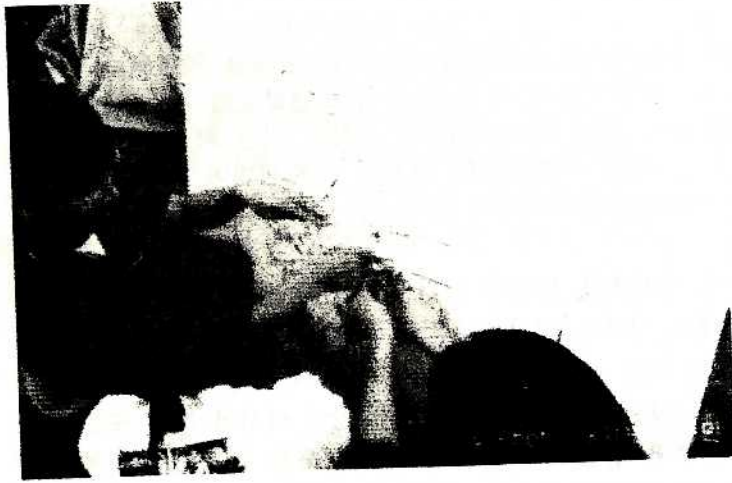
이 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하게 천명되었음에도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기하지 않고 올해 들어 그 시행령에 "…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구나 시행령 제3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장관의 권한 하에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기관이 등급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같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보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면' 등급을 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행정적 강제력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 9월부터 발효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전국의 모



은 PC방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결국 정부 즉 정보통신위원회 의 기준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강제되는 '사실상의 표준'이자 '실질적인 검열'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차단 프로그램은 PC방으로부터 각

급 학교·도서관·기업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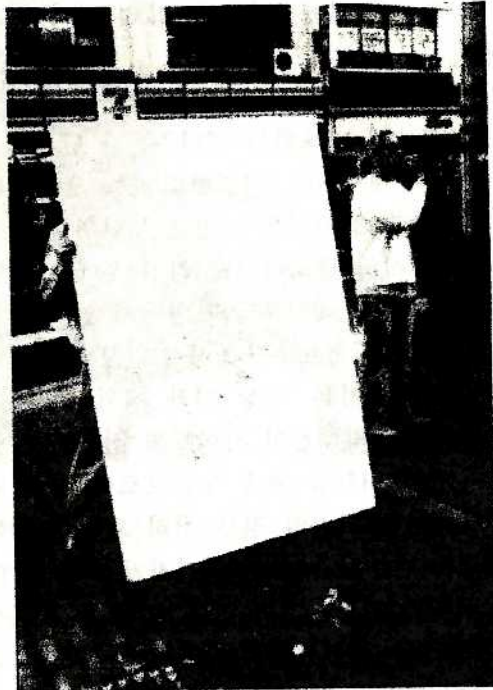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는 정보통신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술적인 특성(PICS)을 들어 이것이 '민간 자율적인 방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기술적이란 이유로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보통신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정치적이다. 즉 정보통신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등급 기준'의 하나를 넘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학교와 도서관에 의해 채택되고 곧 대다수의 국민 인터넷 접속점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결국 정보통신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 등급제가 아니며 정보통신위원회의 행정적 권한이 우선적으로 강제되는, 하나의 행정규제 시스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내용규제 논란의 정치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건들에 주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하려 하였다. 또, 경찰이 전국PC방의 랜카드 맥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운영자는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 행위라 하여 구속 연행되었다. 그런 한편 통신질서확립법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에 대한 비슷한 독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입법 예고되는가 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자 인지 책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상의 문제 조항들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이런 소동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개별 조항의 적시 사항보다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즉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로 '작심'하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발생했던 정보통신부 '해킹' 소동의 전말은 이런 사안들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처음으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이 늘 갈 만큼 당시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1차 시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매일 5~6백 건의 글들이 계속 등록되고 시간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던 단체들은 8월 28일 정오부터 2시까지 2차 온라인 시위를 계획하였고 이때 시위 방식으로 제안된 것은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 혹은 netstrike)였다. 이 시위 방식은 항의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동안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써 마치 현실 공간의 연좌 시위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듯 서버의 정보 처리 흐름을 방해하여 서버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시위 방식이다. 이 시위에 참가자가 아주 많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런데 2차 시위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스템 마비의 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등록한, 새로 고침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되어 있는 자바 스크립트 파일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MBC와 연합뉴스 등 언론은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일제히 해킹이라고 보도하였고 경찰은 8월 29일 용의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월 12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스템 마비의 원인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정보통신부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외부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더러 확인 결과 당시 정보통신부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문제의 자바 스크립트가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했으며 익명의 이용자가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등록한 이 파일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에 의해 게시되거나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억측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국회 모임 등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 시위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온라인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정적 운영'이라는 개념은 서버의 용량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 포괄적인 조항으로 온라인 시위를 제한하였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지정된 정

부 서버 등에서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사실 관계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는 온라인 시위와는 무관하였다. 사실은 왜곡되어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결국 온라인 시위에 대한 반대 근거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최근 제한 조치들과 일련의 맥락 위에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잠재적 위협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또한 '유해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현행법에 따라 최소한도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현행법과 분리하여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법과 제도의 마련은 사상과 표현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확대할 뿐이며 이는 '검열'이다.

4. 나가며

최근에는 공공영역이 해체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윤리가 보수화되는 과정에



서 '청소년 보호' 논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제 논리 가운데 특히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논리는 권력의 성담론 통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의 탄생으로까지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 간다. 현행 청소년보호법만 하더라도 청소년을 노동이나 성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이거나 '불쾌'한 매체로부터 단순히 청소년을 '격리'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소년동성애운동단체가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는 누구에게 유해한가? 가출, 자퇴에 대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토론은 진정 누구에게 유해한가? 청소년에게? 아니면 그들의 국민들에게? 성담

론 통제는 권력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 진행되며 '일상적인' 영역에 대한 통제 기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음란물의 기준은 신체의 노출이나 성행위의 '정상성'을 가지고 판단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반여성적인 음란물은 차별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가부장적 국가 권력은 결코 반여성적인 음란물을 근절할 생각은 없다. 결국 인터넷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술의 방종'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발생성은 비단 '청소년 보호' 논리뿐이 아니라 인터넷 내용의 위험에 관한 모든 종류의 소란에 적용된다.

인터넷 내용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해석되어야 한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매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모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

한 법과 제도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 매체의 내용이 실제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에도, 일련의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 등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모호한 '청소년 보호'의 명분에 의해 중단시켰다. 특히 정부와 언론은 기술을 잘 모르는 기성 세대의 기술 공포(techno phobia)를 조장하며 인터넷이 자살, 폭탄, 청소년의 자퇴나 가출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는 미국 의회의 어린이 온라인보호위원회에서 일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시사적이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가 인터넷에서 적절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린이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요한 배경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정보 격차, 즉 세대 격차에 따른 기술 공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 바 있다.- 참고자료⁴²⁾

42) <http://freeonline.or.kr/>
 정영화(2001),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황성기(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3 부

주요 작가 인터뷰

미술작가 신학철
 만화가 이두호
 음악인 정태춘
 시인 오봉옥
 영화감독 이지상
 미술작가 김인규
 영화감독 김동원

작품이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역사가 된 사람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조선경 || 민예총 정책기획팀

1987년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 공동전시회에 출품된 신학철의 <모내기>가 전국순회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신학철의 <모내기>에 대한 논란이나 제재조



치는 없었다.

그런 것이 3년 후 지역 청년회가 제작한 부채에 인쇄되는 과정에서 인쇄소 주인의 신고로 당시 그림의 작자인 신학철 및 <모내기>는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기소되게 된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면 "신학철의 모내기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형상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표현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통일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그런 것도 미국대통령, 미국사람, 람보, 이티, 코카콜라 등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저해 세력인 북한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미일 제국주의와 군사독재정권만이 통일의 저해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이유이다.

10년이란 기간이었다. 한 달에 한번 검찰에 불러 다니면서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작품에 씌어진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에 대해 토로한 지도, 계류 중으로 사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1992년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있었음에도 해당 검찰은 계속해서 항소를 결정했고 지난 1999년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 다시금 해당 법원으로 환송됐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신학철에게 기소유예보다 낮은 단계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즉, 10년의 공방동안 결론지어진 것은 신학철의 <모내기>는 이적표현물에 속하며(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의 위력으로는 낮은 형을 선고했으나) 1989년 당시 압수된 달력 2부와 <모내기>작품은 압수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전한다.

공방 1, 2년 예술 작품에 개념이 없는 법제처 관련자들에 의해 몇 번을 접히고 테이프로 말려있던 자신의 작품 모내기를, 10년이 지난 지금은 뜯어지고 아크릴 물감이 떨어진 보존상태가 형편없는 '모내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작가 신학철은 <모내기>가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나 친북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고 말한다. 애초 검찰의 고발 내용인 '이적성'에서 신학철의 <모내기>는 모티브를 두지 않는다.



지난 시절, 자신의 고향에서 이뤄지던 모내기 작업을 찍어 둔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의 그림은 고향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운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시절이 바로 '그 시절 그 때'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 했다. 그런 그의 그림은 검찰에 의해 친북 요소가 강한 그림으로 둔갑을 하고 만다. 작품 상단에는 고향시절 평화롭고 따뜻한 농촌풍경을 작품의 중간에는 씨레로 논을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작품 하단에는 미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코카콜라' 등의 미국의 상징적 물건을 배치한 그의 그림이 검찰에 의해 작품상단은 북

을 상징하고 있으며 하단에 위치한 여러 요소들은 남한사회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게 된다. 결국 그의 작품 모내기는 예술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검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고소당하게 된다.

즉, 예술적 가치 외에 적용되는 사상적 검열으로 인해 신학철의 <모내기>는 10년 동안이나 관객들의 시선 밖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그는 "스스로의 작품에 검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하곤 한다"고 한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자기검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작품을 10년 간 그늘에 숨게 한 '국가보안법'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예술가의 작품은 그 시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검열이 아닌 수용자들의 가치판단에 맡겨져야 해" 그는 사회적 검열이 해당기구 및 일부 법령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예술가로서 가장 무서운 눈은 정부당국이 아닌 독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인정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부 및 사회는 보장해 줘야해”

그가 말하는 관객과의 만남은 어떤 특정한 범률에 의한 검열 또는 자기 검열하의 작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술이 사회의 부산물이라는 그리고 사회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사고를 지닌 80년대 민중미술가에게 '사회적 검열'이란 예술가의 생명자체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도 무서워.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어떻게 볼지”

80년대 민중미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시절에 그는 아마 자유로웠는지 모른다. 미술로 사람들의 이성을 깨우는 일, 그리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 몸에 익어버린 화가에게 이제 다양화 되어버린 사회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이 가져다줄 파장이 어떠할지가 우선 걱정이다.

“작가의 작품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면 서서히 도태해. 그래서 더 예술가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해. 그래야만 억누르지 않는 자유스러운 정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과물을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테니까”

그가 말하는 국가보안법은 한 사회의 규범적 혹은 가치적인 법령이라기보다 한 사회의 강압적 이데올로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런 영향은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쳐 작가 스스로 자기검열 상태까지 이른다는 점을 다시금 지적한다.

작가가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마 미세할 지도 모른다. 단지 작품이 완성된 후 예술적 가치(우선된 미적 가치)를 고민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작품이 어떠할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자기검열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미술작가 신학철은 그런 점에 있어 사회적 검열체계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는 이런 법령으로 인해 개개인의 창작활동에 자기 검열이나 법적 공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민미협이라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된 싸움을 지켜봐주고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더욱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집단적 대응이 지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를 생각한다. 당시 신학철의 <모내기> 기소를 두고 민족민주운동계열은 성명서를 통해 기소한 검찰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이를 위한 서명운동 또한 진행됐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신학철은 '모내기' 사건이 자신의 이후 작품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



고 말한다. 그러나 그림을 그려야 하는 화가가 작업실만큼이나 법정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으며 작품활동을 위해 해외를 나갈 때도 해당검사의 동의서를 얻어야만 출국을 할 수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통해 '예술가'를 또 하나의 '투쟁가'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철과 해당 검사는 신학철에게 내려진 판결과 작품 압수 처벌과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에 기소를 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번 일을 위해 작품의 폐기 불가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법원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내 작품을 파기하지는 않을 거야”

신학철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만큼 법원이 자신의 작품을 파기할 명분이 없다고 전한다. 단지 어찌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된 싸움이라 자신의 작품이 증거자료실 어딘가에서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채 잊혀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면 웃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압수된 신학철의 <모내기>와 부채, 달력, 그리고 몇 편의 그림들 중 보관 미숙으로 되돌려 받지 못한 점을 봤을 때,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다.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일 개인이나 한 사회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 시대를 지나 다음 세대에서도 작품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아온 우리의 예술의 역사를 봤을 때, 신학철의 <모내기>에 이적이라는 굴레를 씌운 건 어찌면 예술이라는 가치를 한갓 법으로 규정지으려는 정부의 문제일 수 있다.

“작품을 돌려 받으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죠”라는 말에 그저 웃기만 하는 신학철은 후대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이를 막는 여러 법제들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한다.

예술과 사회, 그 관계맺음이 단지 즉흥적이고 단순한 논리구조에서 만들어지지 않음을, 예술가인 신학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꿈꾸는 예술가가 표현의 자유를 먹고사는 그 때, 표현의 자유 쟁취의 역사가 되어버린 <모내기>가 그의 걸을 지킬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장독대의 작가, 이두호

정은희 || 민예총 정책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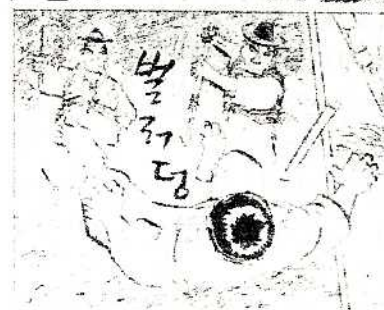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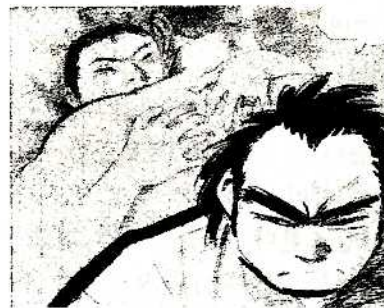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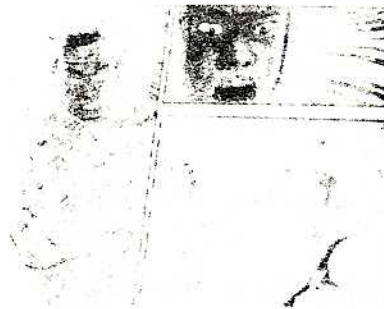
장독대의 작가, 이두호 씨를 만났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있어 그는 일반인에게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만화계의 큰 형인 그는 흔히 청소년보호법이 타격대상이던 '야하다'라고 말해지는 성인물과는 거리가 먼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작가이기 때문이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 그는 80년대 들어 『바람소리』, 『입격정』, 『덩더꿍』 등 시대극화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절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민중의 모습을 '장독대'란 주인공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은 이다.

그러나 한국 만화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인기작가도 청소년보호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청

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검찰은 사회 불온세력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단속에 들어갔고, 예술계에서는 유독 만화에 초점이 맞춰져 대대적인 검열 열풍이 불었다. 일본 만화를 본떠 만들었다는 청소년 폭력서클 '일진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문제의 주범으로 일본 만화가 지목됐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매번 그랬듯 그 다음 희생양으로 국내 만화를 택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만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던 만화계에 가해진 검찰의 탄압은 서리가 쌓인 곳에 눈발이 내린 격이었다. 일본만화가 우리 나라의 열악한 만화시장을 물밑에서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만화를 불온하게 취급하여 우리 사회에서 만화의 가치를 더 없이 희석시켰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이두호 씨는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그는 스포츠조선에 『제마리』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제마리』 중 몇 장면이 음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그는 검찰로부터 이 작품을 모두 복사해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3시간 반 동안의 취소 사이 검찰은 세 장면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첫째



는 여자가 부엌에 나신으로 엮드려져 있는 것인데 뒷 모습으로 허리까지 보이고 있는 장면이며, 둘째 장면은 포옹하고 있는 남녀 중 남자의 등이 나온 것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가랑이 사이에 창을 겨루고 있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 장면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이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고, 그는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평소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그런 만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장면 중 유독 한 장면을 부각하여 문제를 삼는 검찰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이다.

또, 그도 자신에게까지 청소년보호법이 미치는 것은 정말 의외이며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의 작품은 성과 멀 뿐 아니라 성적 표현이나 폭력적 표현에 있어서도 노골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가들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 그의 작품까지 검열에 걸린다면 만화계에 허용되는 표현의 수치는 너무나 척박한 것일테니 말이다.

당시 기소된 이는 그만이 아니다. 편집자, 사주, 만화가 등 14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이두호 씨는 결국 기소유에 판정을 받았다.

그는 너무 암담하고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한달 간 절필 선언을 하게 됐고, 인권운동사랑방이 마련해준 일일감옥체험에 작가 장태산, 원수연 씨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을 회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소유에 판정은 불법의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판결은 유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려 하였지만 기소유에 판정에 대한 항소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창작 연륜 속에 녹아있는 것은 예술성뿐만 아니라 자기검열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이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이 그런 장면을 스스로 수정해야만 했던 때는 1968년대

중반이라고 한다. 당시 그는 중앙일보에 만평을 그렸고, 어느 날 장애 간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을 그린 그림에 대해 신문사측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다. 소년이 손을 뒷호주머니에 찌르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뒷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것이 불온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결국 그림 속의 소년은 차렷 자세로 엄마를 기다리게 됐다고 한다.

또, 1978년 경 소년중앙에 『벤허』를 연재하고 있을 당시 창을 겨누고 있는 장면에 창날을 그리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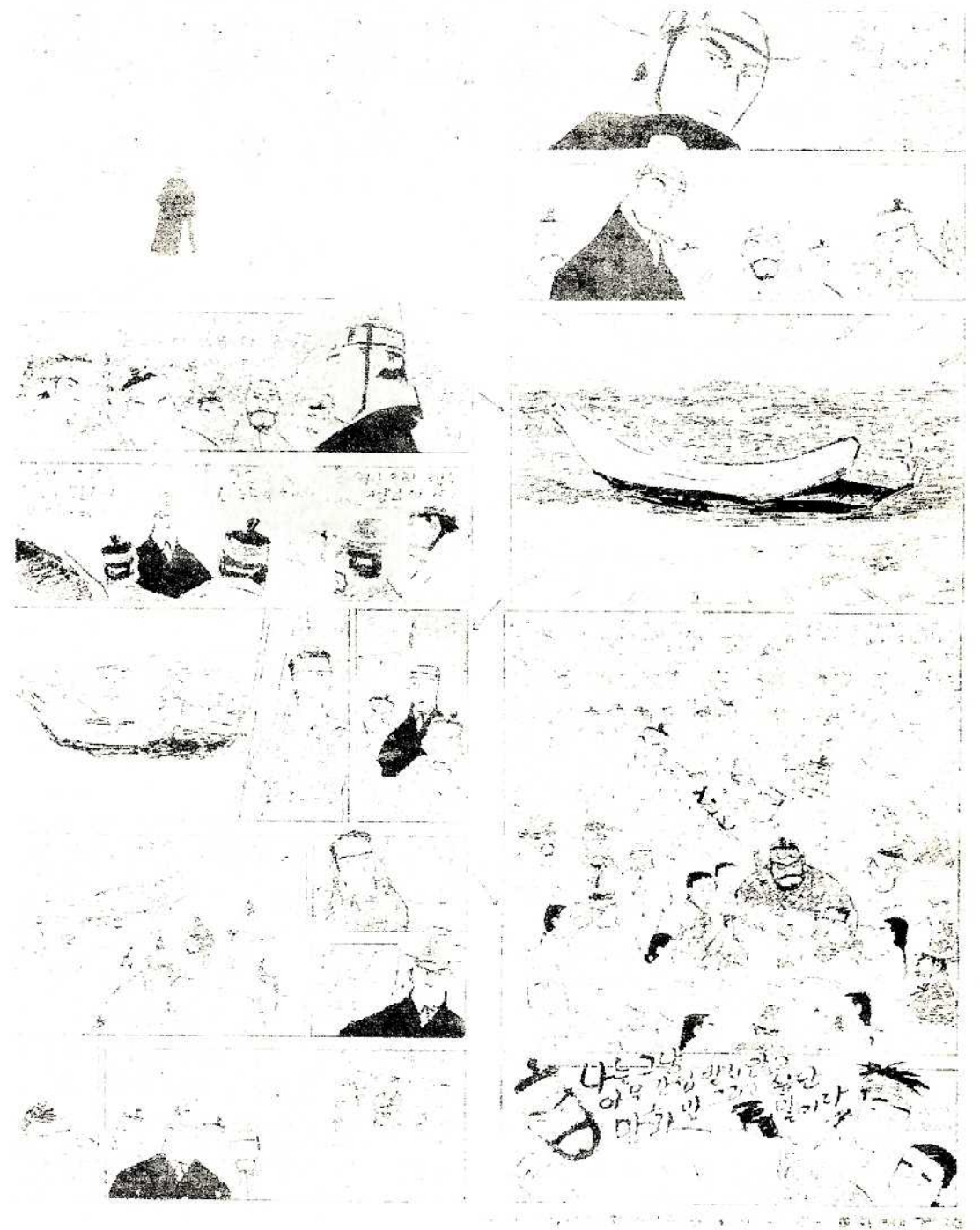
그는 그 시절 사회분위기에 대해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면은 그리지 못하게 했고, 간첩은 선글래스를 끼워야 했으며, 상스럽다는 이유로 '이놈, 저놈'은 '이녀석, 저녀석'으로 대체되었다고 토로한다.

머리칼이 히끗히끗 되도록 만화와 생을 함께 한 그는 "사회적 검열을 제도화하고,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법령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는 "만화를 교과서로 만들려고 했다"며 만화가들에게 창작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그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작하고자 하는 것 모두 다 그릴 수 있게 하고 독자가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자로부터 판단될 수 있을 때 작품성이 없는 작품은 분명 자연 도태되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연 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부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창작자 스스로의 판단능력과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너무 극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그는 정치적 사회적 검열이 없었다면 자신의 작품이 더 진지했을 것이라고 쓸쓸하게 말했다. 바꿔 말하면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는 결국 그의 작품에서 '진지함'을 어느 정도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현재 그는 한국만화가협회 표현의 자유 수호대책위 위원장이다. 또, 세종대학교 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작가 이현세 씨와 나란히 학교 연구실을 쓰고 있는 그는 『천국의 신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한창일 때 이현세 씨와 법정의 거의 모든 자리를 함께 한 이이기도 하다. 한번은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데 증인 출석비로 당시 법정 주차요금과 같은 만천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쓸쓸하게 웃는다. 그리고 그 날 이현세 씨와 함께 만천원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결국 대포를 나웠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는 사회, 사회적 검열과 자기검열이 예술성과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사회는 자신의 세대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그. 그가 원하는 사회는 거의 모든 예술인이 갈구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소원이 이뤄지기에는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 법령의 성은 여전히 거대하기만 한 현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문화의 세기는 바로 이러한 법령이 개폐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문화의 세기에 창작의 자유를 유린하는 악법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검열 법령과 기구들이 온존하고 있는 현재, 바로 지금은 여전히 검열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의 개폐가 시급한 현실이다.

'가요에 대한 사전검열제 철폐운동'의 역사 음악인 정태춘 서면 인터뷰

1. <가요에 대한 사전검열제 철폐운동>의 경과는 ?

제가 1978년, 첫 음반을 내던 때부터 심의 당국(문공부 산하 공연윤리위원회)



과의 실랑이는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그래야 하듯이, 음반으로 곡을 발표하기 위해 당국에 사전 심의(사실상의 검열)를 요청했는데 당시의 데뷔곡인 <시인의 마을>에 대해 '전면 개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가사 내용이 부정적이고 대중가요 가사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에 대해서나 가수가 꼭 왜야겠다는 데

대해 큰 집착이 없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고, 회사측에서 가사를 상당부분 바꿔서 재심 통과되었지요. 당시 문제가 됐던 가사 중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가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로 바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음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2집, 3집 앨범을 내면서 계속되는 '개작', '수정' 지시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서면으로 또는, 심의 회의에 나가서 항의하고 해명하고 했지만 심의위원들의 입장은 완고했고, 이런 사전검열로 인해 저의 많은 노래들이 '수정'되고 '순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노래들은 애초의 가사가 무언지 저도 모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에 《아, 대한민국...》 음반을 내면서 '가요에 대한 검열제 철폐'를 주장하고 그 음반을 검열 받지 않고 출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제 음반은 시중판매를 할 수 없어 소위 운동 단체나 제야 관련 공연장 등에서나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열 철폐 서명도 받았고요. 또, 이때쯤 서울과 지방의 노동문화운동 단체들이 제작 배포한 운동가요 등은 법(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에 의해 박인배 씨 등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그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 뒤, 1993년에 다시 《92년 장마, 종로에서》 음반을 내면서 '검열철폐'를 주장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음반을 운동 단체 등을 통해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비게법'(당시 음비법)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그 법의 가요 검열제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되고 그 제청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게 됐지요.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개정 공청회 등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검열제 폐지를

반대하는 인사들만 모아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고, 이에 대한 많은 비난이 일자 공개 쪽으로,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그 개정 작업에 저도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95년 말 경, 정기국회로 보내기 위한 개정안이 정부에서 정리되었는데 이 때에도 정부측에서는 사전검열을 '사후 검열'로 바꾸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재시키려 했지만 당시 야당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강제 규정이 없는 사후심의제"로 개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 6월에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고, 헌법재판소는 이때쯤에야 "가요에 대한 검열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론한 저희들의 두 음반이 합법화되게 됐습니다.

2. 당시 오랫동안 사실상의 사전 검열로 개작 지시 등을 받는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검열을 통해 내 내면을 들킨다는 것과 굳이 나쁜 관점으로 내 생각들을 감시한다는 것으로 매우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3. 검열 철폐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검열 철폐는 필연이고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라는 비판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가수 활동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위기감도 계속 느꼈습니다. 두 장의 불법 음반을 냈는데, 다음 음반도 불법으로 내면 역시 시중 판매가 안될 터이고, 방송국에서도 받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시 검열을 받아 합법음반을 내기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4.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허수아비 같아 보였고, 내가 이 노래의 창작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5.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요에 대한 검열은 가요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만적인 사회 이데올로기 창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 주류라고 자처하며 온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조차도 사실에서 "가요 심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었지요.

사회 모든 분야의 신속한 변화가 절실한데 마냥 담보하고 있는 90년대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또, 그래서 보다 많은 가요 작가들이 동참했었다면 이 싸움이 6년씩이나 힘들게 갈 게 아니었습니다. 서태지조차도 검열에 항의하여 정면 승부하지 않고 음반에서 가사를 들어내는 것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고요.



6.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단, 그간의 정부 검열제로 습성화된 '자기 검열'이 내 안에서 사라졌고, 상상력이 한층 넓어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방송 심의 등이 있고, 우리 사회 저변의 여러 억압적인 제도나 관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것이 다 풀린 상황은 아니지요.

7.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야만성이나 근대성을 제대로 털어 내고 있질 못합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이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는 식의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 상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시인 오봉옥 서면 인터뷰

1. 침해 및 고소고발 등 조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문학작품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야만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국가, 문학적 상상력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2.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십니까?

첫째, 나는 재판과정은 물론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내가 쓴 작품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둘째, 문학작품이 더 이상 법정에서 서서는 안 되겠기에 창작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자 했다. 다시 말해 대중들 스스로가 잘못된 작품들을 비판을 하면서 외면해 왔고 좋은 작품들은 스스로가 평가해 주면서 선호해 왔던 점을 지적함으로써 문학작품의 평가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대중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문학작품을 실정법으로 다스리려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몇몇 야만적인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작의 자유를 철저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중의 판단을 무시하는, 즉 대중을 바보 천치로 보는 행위일진대 말이다.

3.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나는 작품을 발표하고 난 뒤 온갖 협박을 받아야 했다. 내 작품을 발표했던 출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밤늦은 시간에 불쑥 쳐들어온 피전화,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으면서 나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을 일삼는 괴음성, 끊으면 걸려오고 끊으면 또 걸려오는 전화, 그러다가 전화소리가 한동안 안 들릴 때의 기분(금방이라도 문을 박차며 쳐들어올 것 같은), 그래서 꼭두새벽까지도 잠을 못 붙인 채 전화통만 응시해야 하는 참담한 기분, 더구나 무장까지 한 채로 기다려야 하는 문을 잠그고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우익테러분자일 게 뻔한 상황에서 경찰마저 믿을 수 없기에-처참한 느낌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상상에 의한 공포이다. 언젠가는 낯선 이들에게

끌려가겠지. 그래서 안기부나 치안본부의 그 으스스한 지하실로 끌려가겠지. 끌려가더라도 내 존재를 알려야 될텐데, 그 솔한 의문사를 생각한다면 내가 잡혀가는 것은 알려야 되는데...그러기 전에 할 일이 있지. 이 일은 이렇게 정리하고 저 일은 저렇게 정리하자. 누구는 모르는 사람으로 하고 누구는 서클 관계로만 정리하자.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한 것이다.

4.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필화사건을 겪은 이후 내 스스로 작품을 검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내 상상력의 범위를 스스로 제약하다니. 그것도 작가가 말이다. 작가의 생명력이 무한한 상상력에 있는 것이라면,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작가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망명이나 가 버릴까. 아니야, 그것은 비겁한 짓이지. 이러한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았을 대한민국의 작가들.

5.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작가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제도와 법률을 뜯어고쳐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작가들에게 위대한 것인지, 그것은 작가들뿐 아니라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6.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쓰고 있는 글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내 스스로가 깜짝 놀라 진저리를 친 적이 그 얼마나 되었던지. 시는 물론 이거니와 동화를 쓸 때에조차 나는 깜짝 깜짝 놀라곤 했다.

7.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권력의 야만성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 작가란 '독자적인 하나의 정부'라는 말도 있거늘.

8.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곤 한다.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하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생활 속에서 파시스트적이라는 사실이다. 가정 안에서는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사회 활동에서는 대단히 이기적이며 폭력적이고, 또한 타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시인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지 않는다. 혹여 뭔가를 가르치는 순간 그 아이의 상상력의 범위를 줄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담아내는 기술이라는 것이 자칫 상상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다.

영화등급분류보류 위한 결정 받아 낸 <둘하나 섹스> 이지상 감독 서면 인터뷰

1.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 조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예술가라기 보다는 영화감독으로서)
우스웠습니다.
그 놈의 눈들 다 어디 갔나.
그 마음들은 다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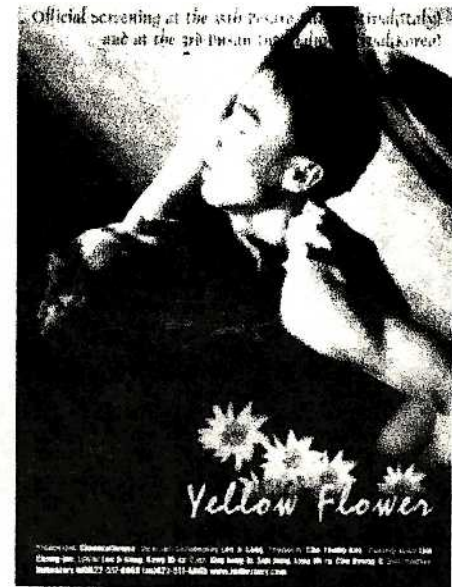
2.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영화진흥법 등급분류보류 조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십니까?

저항이라기 보다는 그저 제 일상이라 할까, 뭐, 늘 제가 하는 일로, 그들, 혹은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저항이라면 저항이겠지요?

3.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별로없었지만, 단지, 국가 권력이란 것이 다 그런 거다. 권력은 제어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계몽하고 그런 거다. 저들 속성인데 어찌랴. 그냥 우리는 저들 눈치보지 않고 우리 길 가면 된다. 잡아넣으면 들어가고 풀어주면 어구 고맙습니다 하면 되고, 그러다 이거 정말 안되겠다 하면 그때 총 들면 되고, 작품이 무기 이거늘 법령들고 어찌 일일이 싸우랴. ... 뭐 그런 거.....

불온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국가를 원치 않는다. 권력을 원치 않고, 언제 소국과 민이 올 건가. 언제 땅이 땅을 가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지 않고, 남녀가 저절로 드나들며 미추가 두둥실 넘나들 건가. 허나, 권력보단 권위가 더 싫을 때 있으니,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동네에 더 많을 수 있는 그 놈의 권위. 여기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나?

4.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 하셨습니까(선생님의 경우 등급분류조치를 받으신 후 영화에 대한 수정이나 폐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심의 때문일지라도, 감독이 수정하면 그것도 작품이지. 지들이 뭐.....

5.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등급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을, 혹은 마음을, 좀 더 깊게, 넓게 가지기를. <돌 하나 섹스>가 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쉬리>보다 훨씬 나은 영화라는 것,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쉬리'보다는 <돌 하나 섹스>를, <돈오>를 보는 것이 더, 아주 더, 삶에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볼 줄 아는, 좀 더 깊고 넓은 눈, 마음을.

6. 사건(등급분류보류 이후)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7.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싸운다면 법령 개정이 아니죠.

법령이 아닌 '그것'을 위해 싸우는 거죠.

한걸음씩이라고?

따따라는 그래선 안됩니다.

단박에 그 곳.

꿈 꾸는 그 곳으로 날아 들어갑니다.

8. 표현의 자유관련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막으렴. 우린 그저 갈 뿐.

표현의 자유는 없다

미술작가 김인규 서면 인터뷰

1. 침해 및 고소고발 등 조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 하셨습니까?

처음에 몇몇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고 나왔을 때,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모든 수



단을 동원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삭제를 하고 잠시 이 국면을 비켜갈까 하고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삭제하려고 하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것은 나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행위이자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이지요.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작업일지라도 그럴 수 없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해보든지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이 버텼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검찰에서 문제삼을 거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사이니 교육청에서 문제삼고 나오고, 징계 운운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어도요. 더군다나 긴급체포까지는요. 당황스럽더군요.

2.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셨습니까?

글쎄요. 나는 현재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문화연대에서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해 변호하는 활동 즉,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3.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나의 사건에 대한 위법성-음란성 여부를 가지고 법정에서 지리한 공방은 나라는 개인은 나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했고 검찰은 나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나는 판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가를 설명해야 했으며 이는 내가 "현행"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이 음란하면 안 되느냐"하는 반론을 떠나 적어도 나의 작품활동이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성욕을 즐기는 입장에서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사건 경과과정에서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긴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나의 작품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교사 신분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합의의 하나를 바꾸거나 분명하게 하

는 것이기에 일단 합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지리한 과정이었지만 현재로서 그런 최소한의 범주에서의 성공 가능한 노력이 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법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내가 얼마나 합법한 테두리에서 작품을 했는가를 애원하다시피 명쾌하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 즉 창작물에 대한 단순화되고 명쾌한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미술창작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

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작품이 지닌 예민한 부분은 사그리 증발되고 무미건조한 설명서로만 남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예술적인 행위이자 나라는 창작자를 작품 전의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점에서 아주 어려운 설명과정이었습니

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표현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야만 하는가였습니다. 그럴 때 법은 예술 위에 올라서게 되고 예술은 그것이 허용한 그라운드에서 이뤄지는 연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술은 순간 아주 답답해지며 천박해집니다. 나의 작품은 자유를 갈구하고자 했던 행동이었던 같은 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애원하는 듯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공판이 끝나고 방청해주었던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했더니 한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기분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어쨌든 그 과정이 합법적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4. 작품의 수정이나 폐기 등 자신이 스스로 창작물을 수정할 때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 개인홈페이지가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사이트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다시 시정하고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작품을 삭제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시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교육청은 직위해제하고, 거기에 또 다른 싸움은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답답할 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크나큰 상처지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마음먹고 하겠습니까? 늘 눈치보고 살아야하는 상황이 되는 기분이지요. 참담합니다.

5.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작의 영역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황당합니다. 우리사회가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아주 자유로이 표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업적인 현상일 뿐이지요. 이번 일을 통해 문화적인 영역은 문화적으로 해결되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문화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6.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의식하게 되지요. 혹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지금 재판중이니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만일 그와 같은 표현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법을 의식하고 하게 될 겁니다. 재미없는 거지요.

7.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무줄같이 상황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 보여요. 그것이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그들의 방식대로 인터넷을 통제한다면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문화적 영역은 문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은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8. 표현의 자유관련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법적 기준에 의해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일일이 그렇게 된다면 표현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푸른 영상을 꿈꾼다

감독 김동원 서면 인터뷰

1.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 조치를 받은 후 예술가로서의 개인적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심의나 등급보류를 받은 적 없다.

2. 창작물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령(영화진흥법 내 등급보류 조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십니까?

푸른영상이 저촉받은 법률은 음비법의 등록과 심의에 관한 조항,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 이적 표현물 제작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는 주로 국보법위반과 관계하여 이루어 졌으나 국보법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한 경찰은 음비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등록에 관한 조항은 과대한 설비를 전제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끝까지 거부했다. (지금은 설비규정이 없어졌음)

심의받지 않은 작품은 판매, 대여, 배급, 상영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각종 교육용 비디오가 아무 문제없이 배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시대에 맞지 않는 효력 없는 법률이었다. 푸른영상에 대한 등록이나 심의에 관한 법 적용은 사실 비전향장기수들을 다룬 몇몇 작품에 관한 표적 수사였으며 정치적 탄압이었다. 독립영화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시위와 세미나를 여는 한편 4개월 동안 매주 명동성당에서 멀티비전을 이용한 거리 상영회를 개최하면서 또다른 탄압을 유도하면서 음비법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독립영화인들은 사건이 커질수록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추가 구속은 없었다. 그 후로도 푸른영상은 음비법을 무시하며 작업을 계속했고 98년 또 한번의 구속과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다.

3.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사건 경과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80년대 독립영화인들이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음비법

이 있는지, 비디오 다큐멘타리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도 몰랐을 정도로 무지했다. 알고 난 후에도 비영리적 예술 표현에 각종 심의를 강제하고 더구나 적지 않은 액수의 심의료까지 내야하는 법이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다. 수사관들도 모든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 심의는 불필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이직까지 경우에 따라 표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4. 사건을 겪은 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화나 비디오 뿐아니라 소설, 대중가요, 미술 등에 가해지는 탄압에 문화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력과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검열제도나 심의문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변호사들이 있어야 한다.

5. 사건을 겪은 이후 작품활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다만 푸른영상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보여준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제작을 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6. 자신에게 적용된 법령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디오물의 90% 이상이 이미 심의 받은 영화들이다. 또한 나머지는 거의 교육, 홍보물이며 음란물들에 대해선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는 불필요하다. 최소한 영화제 등에 상영된 기록영화 등에 대해선 비디오 가게를 통한 배급이 가능하도록 심의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7. 표현의 자유관련 특별히 하고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이번 자신의 누드를 공개한 미술교사사건에서도 드러 났듯이 아직 우리사회의 기성세대나 국가권력기관의 예술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사실 그러한 책임은 예술가들에게도 있다. 그만큼 무난한 작품들만 하면서 대중들의 예술이해 수준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예술가들은 일부러라도 표현의 금기를 깰 필요가 있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4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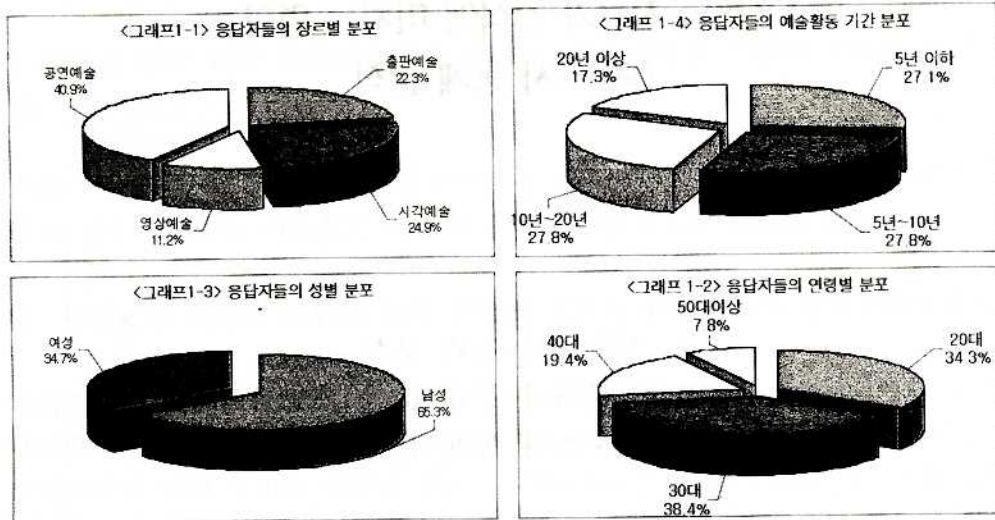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통계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설문조사 통계 분석 보고서
3. 설문조사 통계 분석 보고 전문

1. 설문조사 통계 분석 종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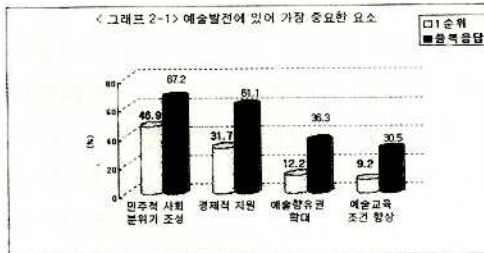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이번 설문에 응한 예술가는 총 269명이었다. 이 중 공연예술(음악, 연극, 춤)에 속하는 예술가는 110명(40.9%), 시각예술(미술, 사진)은 67명(24.9%), 출판예술(문학, 만화)과 영상예술(영화, 애니메이션)은 각각 60명(22.3%)과 30명(11.2%)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103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0대가 92명(34.3%), 40대(19.4%), 50대 이상(7.8%) 순이었다. 남자가 173명(65.3%)로 여자보다 많았다. 예술활동 기간(창작기간)은 대체로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이 각각 27.8%(7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하가 27.1%, 20년 이상이 17.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묻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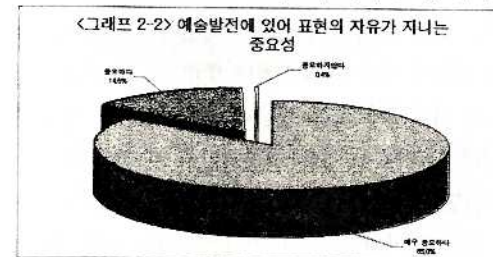
예술가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순위별 표기)”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1순위 4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르별로는 출판예술에 속하는 예술가들의 58.5%가 이 항목을 1순위로 지목해 문학인들과 만화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1.9%), 40대(53.8%), 30대(44%), 20대(42%) 순으로 이 항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흥미로웠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갈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창작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 항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들은 그 다음으로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31.7%)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 항목은 특히 시각예술가들의 37.3%와 30대 예술가들의 37%에 의해 1위로 지목돼 시각예술 종사자들과 왕성한 예술창작 활동을 벌이는 연령대의 예술가들이 비교적 경제적 지원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예술가의 33.5%가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답한 반면, 남자는 29.2%에 그쳐 여자가 남자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작활동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예술 활동 향유 및 접근권 확대’나 ‘예술교육 환경의 조건 향상’을 1순위로 꼽은 예술가는 각각 12.2%, 9.2% 정도에 그쳤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특히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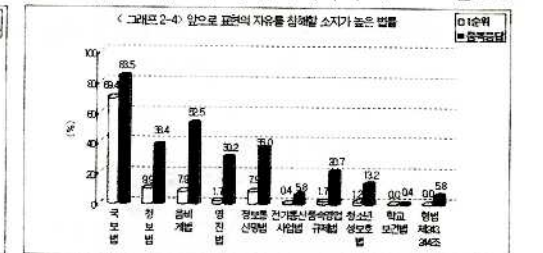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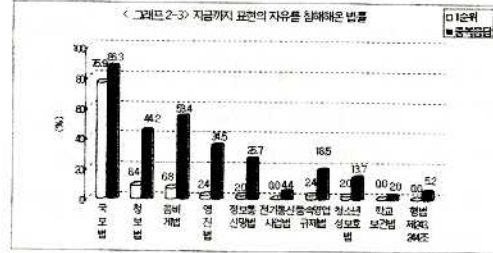


또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85%)고 답변해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술가(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

다)의 총수는 전체 응답자 중 4명을 제외한 26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또한 우리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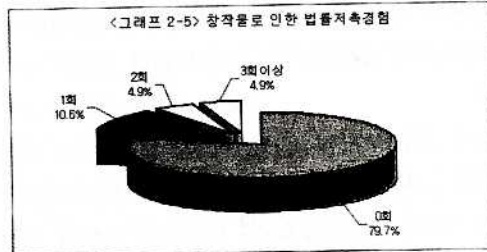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75.9%)이 월등히 1순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8.4%),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6.8%) 순이었다. 특히 40대 이상(93.6%), 시각예술가(88.1%), 창작기간 20년 이상(95.6%)가 각각 1순위로 국가보안법을 꼽아 오랜 동안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3개까지 중요도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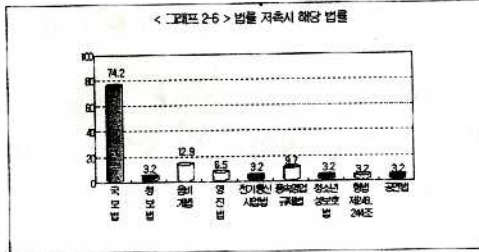


답해 달라”는 요구에서도 69.4%가 국가보안법을 1순위로 지목해 그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에 비해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등은 각각 9.9%

7.9%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법률들도 10%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50대 이상과 40대 이상의 예술가 94.7%, 84.7%가 각각 국가보안법을 1순위로 지목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창작기간이 오래된 예술가들일수록 국가보안법을 1위로 지목한 것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통계치는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광범위한 사상·인론출판·표현의 자유 침해가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예술가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질문에 대해 순위를 매기지 않고, 중복답변으로만 통계치를 낸 결과에서는 국가보안법, 음비계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영화진흥법이 각각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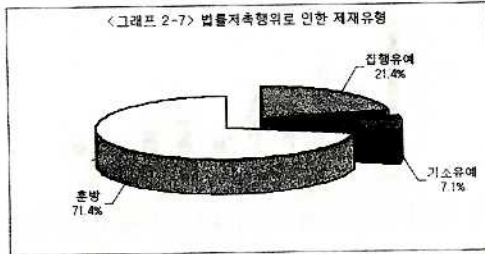


52.5%, 38.4%, 36%, 30.2%를 기록했다. “작품창작과 유통 시 법률 저촉 여부”를 묻은 질문에서는 설문답변자의 20.3%가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 중에서 2회 이상 법률에 저촉된 예술가도 9.6%나 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법률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분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창작기간이 오래된 예술가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법률에 저촉됐다는 답변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보면 자연스럽지만, 창작 기간 및 연령대와 법률저촉 빈도를 비례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낮은 연령대의 예술가나, 창작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예술가들도 못지 않게 법률에 저촉된 경험이 많음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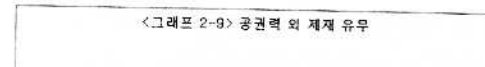
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위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저촉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응답자의 74.2%로 월등히 많았다. 이 질문에는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술가들 중 31명이 참여했는데, 음비계법(1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9.7%), 영화진흥법(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받았던 제재의 종류”로는 ‘조사 후 훈방’(71.4%)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가 기소유예(7.1%), 집행유예 등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출판예술의 경우에는 집행유예(60%)가 ‘조사 후 훈방’(20%)보다 월등히 높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출판예술 분야의 특수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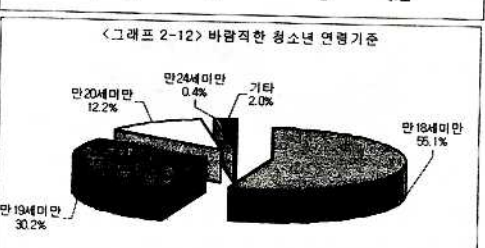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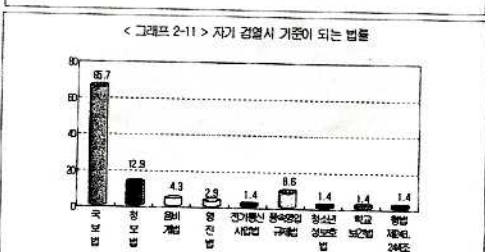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응답한 예술가의 45.2%가 ‘작품 유통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답해 창작물

과 관련해서는 항유자와의 소통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가장 빈번한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이밖에 ‘작품 몰수’(3.2%), ‘작품에 대한 훼손’(12.9%)도 적지 않았다.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훼손이 23.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해 과거 공연물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짐작케 했다.



“공권력에 의한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6.3%의 예술가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창작기간이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총 사례수 40명) 중에서는 특정집단에 의한 협박이나 압력(특정 종교우익단체에 의한 창작활동 방해)이 22.5%(9명)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과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및 감시,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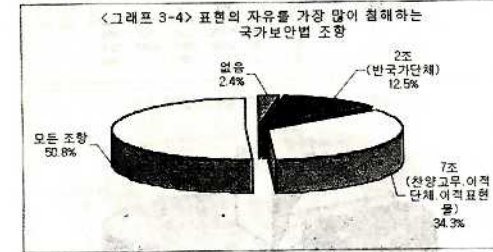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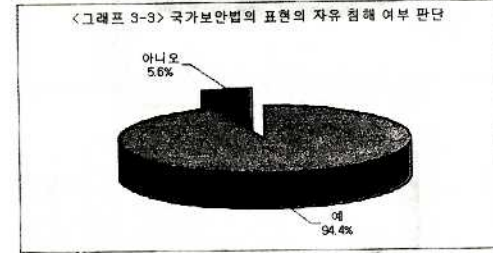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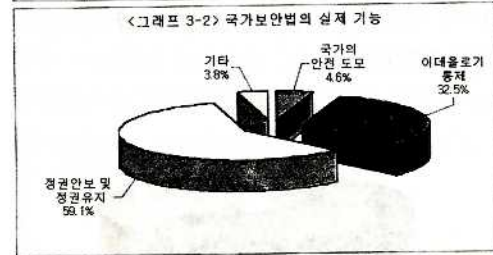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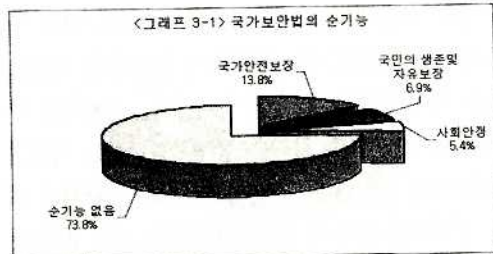
충격적인 것은 응답한 예술가의 35%가 “작품 창작시 자기검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예술 분야일수록, 남자 예술가일수록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창작기간이 오래된 예술가일수록 자기검열 비율이 높아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었다. 이는 예술가의 예술적 영혼을 갉아먹는 법제도 때문에 예술적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창작여건에서 예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사회발전도 그만큼 담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창작 시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이 주로 무엇이나는 질문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보법(총 응답자 70명의 65.7%)이었으며, 청보법이 12.9%로 그 뒤를 이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고려한다는 예술가도 8.6%나 됐는데, 공연예술가의 17.9%가



이 법률을 고려한다고 답해 공연예술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연령기준을 단일화한다면 몇 세가 타당하겠느냐”를 묻는 대목에서는 응답자의 55.1%가 ‘만18세 이하’를 지목했으며, ‘만19세 이하’와 ‘만20세 이하’는 각각 30.2%, 12.2% 정도에 머물렀다. 영상예술에 속한 예술가의 경우 75.9%가 만 18세 이하가 타당하다고 답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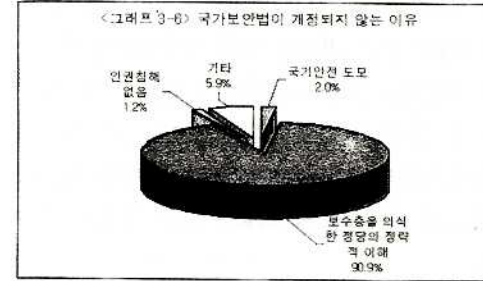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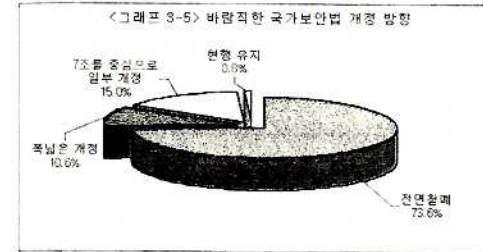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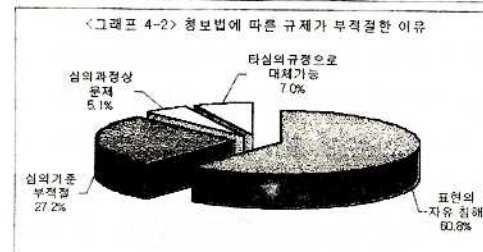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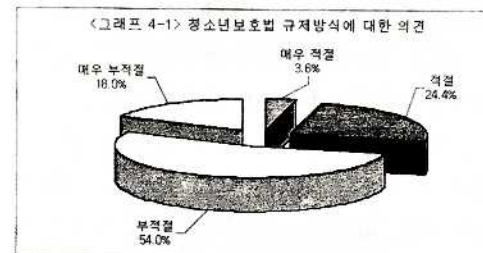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답했다는 점과 설문에 응답한 모든 영상예술가의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는 최대의 조항으로 지목한 점은 시사하는

먼저,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묻는 질문에 ‘순기능 없음’을 답한 예술가가 73.8%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실증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도모’는 응답자의 4.6%에 그쳤고,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과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가 각각 32.5%, 59.1%에 달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창작기간이 오래됐을수록 비교적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항목에 대해서도 ‘예’라는 답변이 94.4%로 월등히 높았다.

“국가보안법 중 표현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법조항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예술가의 답변이 50.8%나 돼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이나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가입/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지목한 예술가도 모두 합해 46% 정도에 달했다. 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 특히 65.9%의 예술가는 제7조



(4)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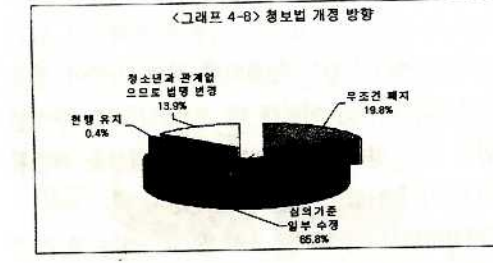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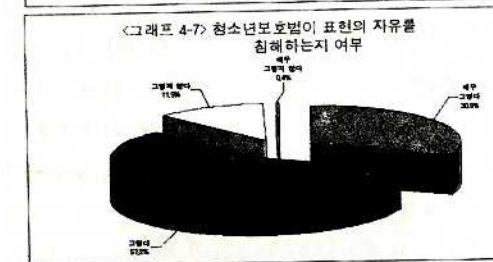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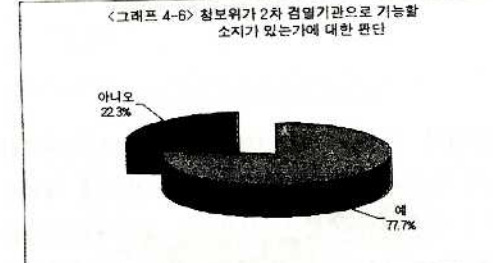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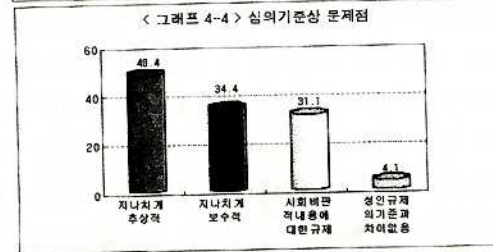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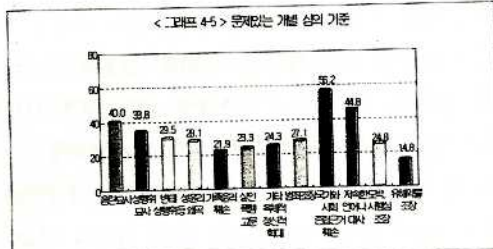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등을 통해 청소년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술가들은 ‘적절하지 못하다’(54%)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72%의 예술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영상예술 분야의 예술가일수록, 20대일수록 거부감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은 결과 많은 예술가들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60.8%)이거나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27.2%)이라고 답했다. 청보법의 경우 부정적 인식과 연령대 및 창작기간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대신,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영상 영역이나 재기발랄한 창의성을 작품활동에 담고 있는 20대의 경우가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보기’로 제시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고르라는 요구(중복답변 가능)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대부분이 선정성, 음란성, 건전한 시민의식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골랐다. 지목된 항목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 각각

바가 많다.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전연철폐’가 73.6%를, 부분개정 혹은 일부개정이 나머지를 차지한 반면, 현행유지는 0.8%에 불과해 폐지나 획기적 개정이 불가피함이 명백해졌다. 특히 50대 이상, 창작 경력 20년 이상의 예술가 중에서는 아무도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90.9%나 되는 많은 예술가들이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함께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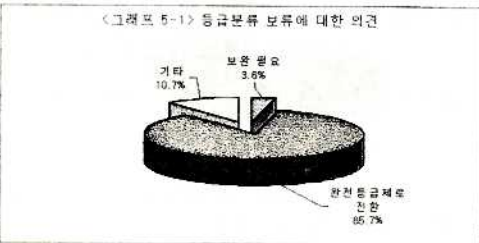


40.1%와 70%를 차지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의 기준의 문제점”(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48.4%),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34.4%), ‘음란물만이 아니라 사회비판적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3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는 창작기간 20년 이상과 50대 이상의 예술가들일수록 심의기준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 예술가들이 사회일반의 경향과는 달리 진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개별 심의기준 중 부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서는 12개의 개별 심의기준이 비교적 고른 분포로 지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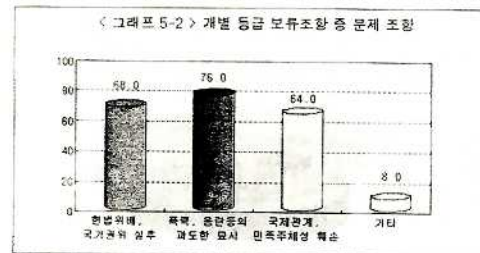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예술가들이 ‘예’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예술가가 88.1%에 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러한 답변 결과들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유지”와 관련된 질문에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심의기준들 일부를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5.6%에 이르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질문들 모두에서 영상예술 분야에 속한 예술가들의 정보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문화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영상 분야에 속한 예술가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받아 왔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 영화진흥법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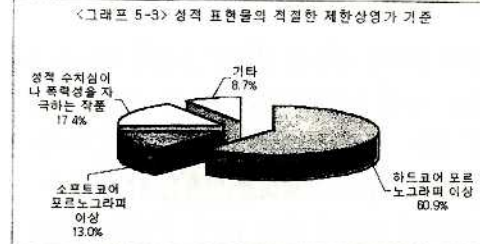
“영상예술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주시시오”라는 전제를 깔고 임한 이 조사 영역에는 총 30명의 예술가가 설문에 참여했다(1차 설문 조사에서는 13명만이 참여해 제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이 결정된 “등급분류 보류”를 묻는 질문에(조사 진행 중에 현재의 판결이 나왔음) ‘어떠한 등급보류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등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85.7%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앞으로 문화부가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어떤 방향으로 관점을 잡아야 하는지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등급분류보류제도 보완 및 개정에 동의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급분류 보류 기준”(중복응답 가능)을 묻는 질문에서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가 각각 68%, 76%, 64%로 엇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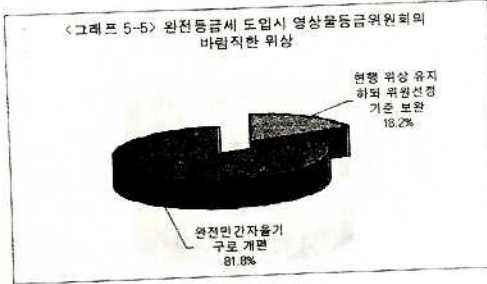


완전등급제에 찬성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이 60.9%로 월등히 높았고,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이 13%,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성을 자극하는 작품’이 17.4%를 각각 차지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적 표현에 대한 기준도 등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질문에서는 ‘그렇다(성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가 68.2%를, ‘아니다(성적 문제에 비해서 폭력은 좀 더 너그럽게 용인할 수 있다)’가 나머지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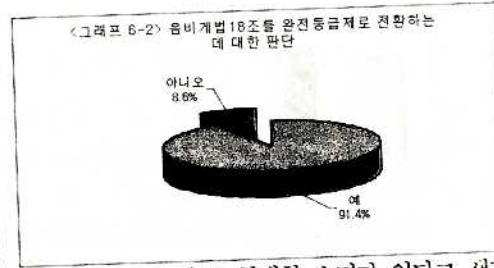
“완전등급제 도입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행 위상이 적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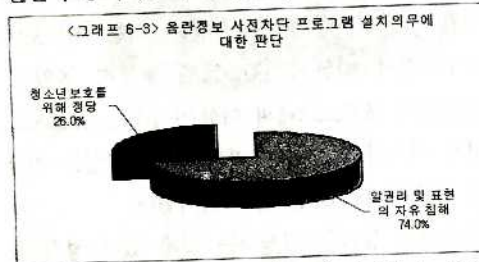
다는 아예 없었고, '미국의 영화분류및등급협회(CARA)처럼 완전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 또한 문화부가 영화진흥법을 개정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화진흥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각 항목들 간 특별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6)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계법)에 관한 질문

이 질문영역에서도 역시 "영상예술 및 음악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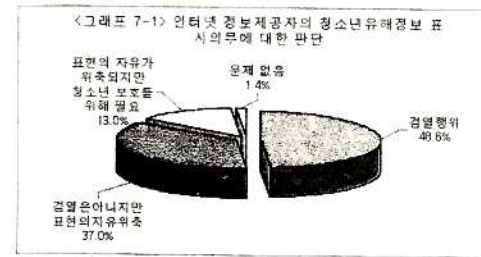
먼저 "음비계법 18조에 의한 등급분류보류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0.4%에 달하는 예술가가 '그렇다'고 답해 등급분류보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역시 "등급분류제도의 완전등급제로의 전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1.4%의 예술가가 '동의한다'고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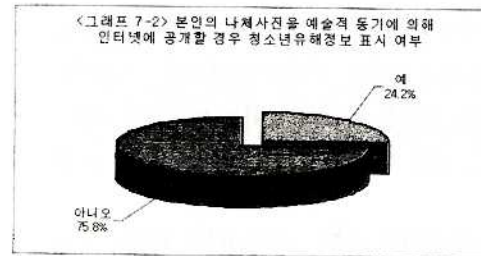
"음비계법 32조에 따른 PC방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요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라는 의견이 7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흥미롭게도 음비계법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반대로 연

령대별로, 창작경력 기간별로 음비계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도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례수가 한정된 한계도 작용했겠지만, 40대나 50대의 경우 아직까지 PC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무화설치 조항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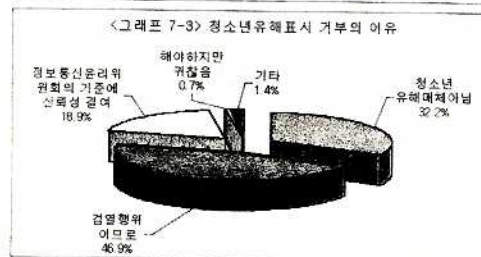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에 의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국가의 검열행위이다(48.6%)', '검열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다(37%)'라고 답해 이 규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은 14.4%에 그쳤다. 이 질문의 경우에도 역시 영상예술가들의 거부감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50대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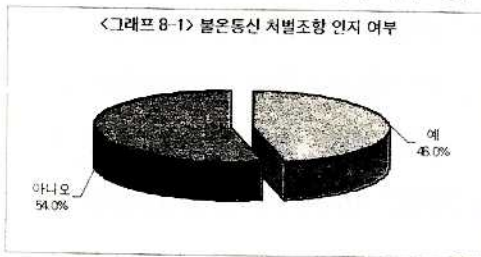
"만약 자신의 나체사진을 예술적 동기에 의해 홈페이지 올리게 된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시겠느냐"는 질문에 75.8%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예술가들이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이 경우에도 영상예술가들의 92.3%가 '아니오'에 답한 반면 50대의 40%만이 '아니오'를 지목한 것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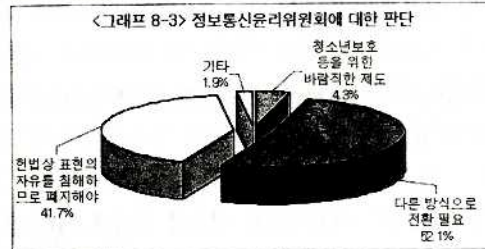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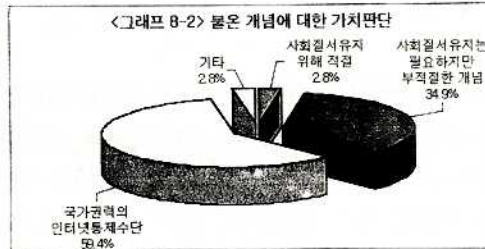
'아니오'에 답한 예술가들은 그 이유로 '국가가 검열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46.9%)'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다'(32.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18.9%)' 순이었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도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해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여기에서는 위 법 53조 '불온통신 금지 처벌' 조항을 모른다는 예술가가 54%나 돼서 우려스러웠다.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국가권력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감시



하고 통제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답변이 59.4%로 제일 많이 나왔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적절한 개념이다'는 답변도 34.9%나 됐다. 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이다'라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서의 불온정보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인터넷내용등급제,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를 꼽은 예

술가가 52.1% 정도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확한 불법행위임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가 41.7%, '청소년보호 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가 4.3%를 각각 차지했다. 여기에는 영상예술가일수록, 낮은 연령대의 예술가일수록 폐지나 개정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분포도가 그려졌다.

어쨌든,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으며, '불온'조항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 조항'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러운 감도 없지 않았다.

2.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2001년) 반공 및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 등의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예술활동의 사례를 조사한다.

㉡ 실제 창작인들과의 면담/설문 작업을 통해 정치/사회적 검열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위 두 자료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위 결과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를 제작하고, 포럼, 여론홍보 등을 통해 문화적 의제로 공론화시켜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나은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 주체

㉠ 주최단체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통계분석 기관 : (주)한길리서치 연구소

㉢ 자문위원 : 심광현

㉣ 기획위원 : 이동연, 안성배

㉤ 진행위원 : 정은희, 조선경, 정인선, 이유주혜

3) 모집단(조사 대상) 및 표본크기 : 예술인 269명

㉠ 공연예술(음악, 연극, 춤) : 110명(40.9%)

㉡ 시각예술(미술, 사진) : 67명(24.9%)

㉢ 출판예술(문학, 만화) : 60명(22.3%)

㉣ 영상예술(영화, 애니메이션) : 30명(11.2%)

4) 협조단체

(사)영화인회의, (사)한국연극협회,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과천마당극제 사무국, 포럼A, 독립예술제2001 사무국, 여성문화예술기획, 우리문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사)한국민족음악인협회, (사)민족미술인협회, (사)민족사진가협회, 민예총 영화위원회, 민예총 지역조직

5) 조사 기간 2001년 8월 20일(월)부터 9월 24일(월)까지 5주간

6) 조사 장소 전국 주요 시도

7) 조사 방법 및 절차

㉠ 설문지 작성 및 제작 :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문과 협조

㉡ 표본추출 : 장르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 ① 장르 ② 연령대 ③ 성별 ④ 창작기간

㉢ 설문조사 : 직접 방문, 협조공문 발송과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독려

㉣ 설문 수거 및 통계 : 통계 전문기관에 의뢰 ※ 자료수집 방법 :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 자료처리 :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친 후 SPSS 통계프로그램 이용

㉥ 분석방법 :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 후, 각 문항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분석

㉦ 분석 및 분석결과 기술 : 워크샵을 통한 분석 및 분석결과 분야별 집필

8) 설문조사 홍보

㉠ 포스터 :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발간과 연계

㉡ 인터넷홍보(배너광고) : 주최단체 홈페이지 등

㉢ 기타 홍보 : <일일문화정책동향> 등 문화예술 관련 매체

3.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전문

(1) 조사의 개요

1) 조사설계

㉠ 표본설계(Sample Design)

차 원	내 용
(1) 모 집 단	2001년 9월 현재 4개 장르(출판예술, 시각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종사자
(2) 조 사 기 간	2001년 8월 20일 ~ 9월 24일
(3) 표 본 크 기	269명
(4) 표본추출방법	장르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5)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2) 자료처리 및 분석

㉠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분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 ① 장르
- ② 연령
- ③ 성
- ④ 창작기간

3) 표본의 특성

	구 성	
	사례수	%
■ 전 체	269	100.0%
□ 장 르 별		
출판 예술	60	22.3%
시각 예술	67	24.9%
영상 예술	30	11.2%
공연 예술	110	40.9%
□ 연 령 별		
20 대	92	34.3%
30 대	103	38.4%
40 대	52	19.4%
50대 이상	21	7.8%
□ 성 별		
남 자	173	65.3%
여 자	92	34.7%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72	27.1%
5년 이상	74	27.8%
10년 이상	74	27.8%
20년 이상	46	17.3%

(2) 통계분석표⁴³⁾

문)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주십시오.

1-1. 제1순위 분석

	사례수	P1R1			
		① 표현의 자유보장등 민주적사회 분위기조성	②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가능하게하는 경제적지원	③ 시민들의 예술활동향유 및 접근권 확대	④ 예술교육 환경의조건 향상
		%	%	%	%
■ 전 체	(262)	46.9	31.7	12.2	9.2
□ 장 르 별					
출판 예술	(60)	58.3	26.7	6.7	8.3
시각 예술	(67)	38.8	37.3	13.4	10.4
영상 예술	(30)	53.3	30.0	16.7	.0
공연 예술	(103)	42.7	32.0	13.6	11.7
□ 연 령 별					
20 대	(88)	42.0	27.3	17.0	13.6
30 대	(100)	44.0	37.0	10.0	9.0
40 대	(52)	53.8	30.8	13.5	1.9
50대 이상	(21)	61.9	28.6	.0	9.5
□ 성 별					
남 자	(170)	48.8	33.5	11.8	5.9
여 자	(89)	42.7	29.2	12.4	15.7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70)	54.3	20.0	12.9	12.9
5년 이상	(71)	40.8	35.2	15.5	8.5
10년 이상	(72)	41.7	38.9	12.5	6.9
20년 이상	(46)	52.2	32.6	6.5	8.7

43) 모든 통계 총합은 100%

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2. 제2순위 분석

	사례수	P1R2			
		① 표현의 자유보장등 민주적사회 분위기조성	②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가능하게하는 경제적지원	③ 시민들의 예술활동향유 및 접근권 확대	④ 예술교육 환경의조건 향상
		%	%	%	%
■ 전 체	(249)	21.3	30.9	25.3	22.5
□ 장 르 별					
출판 예술	(60)	21.7	35.0	21.7	21.7
시각 예술	(61)	26.2	26.2	24.6	23.0
영상 예술	(29)	31.0	27.6	24.1	17.2
공연 예술	(97)	15.5	32.0	27.8	24.7
□ 연 령 별					
20 대	(83)	25.3	24.1	27.7	22.9
30 대	(97)	15.5	29.9	28.9	25.8
40 대	(48)	22.9	39.6	22.9	14.6
50대 이상	(20)	30.0	40.0	5.0	25.0
□ 성 별					
남 자	(161)	20.5	31.1	23.0	25.5
여 자	(85)	23.5	28.2	30.6	17.6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67)	16.4	28.4	29.9	25.4
5년 이상	(69)	24.6	33.3	26.1	15.9
10년 이상	(68)	19.1	26.5	29.4	25.0
20년 이상	(42)	28.6	38.1	7.1	26.2

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3. 제3순위 분석

	사례수	P1R3			
		① 표현의 자유보장등 민주적사회 분위기조성	②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가능하게하는 경제적지원	③ 시민들의 예술활동향유 및 접근권 확대	④ 예술교육 환경의조건 향상
		%	%	%	%
■ 전 체	(248)	16.1	19.8	30.2	33.9
□ 장 르 별					
출판 예술	(60)	8.3	21.7	36.7	33.3
시각 예술	(61)	14.8	16.4	27.9	41.0
영상 예술	(29)	13.8	13.8	37.9	34.5
공연 예술	(96)	22.9	22.9	26.0	28.1
□ 연 령 별					
20 대	(83)	18.1	30.1	20.5	31.3
30 대	(96)	18.8	14.6	33.3	33.3
40 대	(48)	14.6	14.6	35.4	35.4
50대 이상	(20)	.0	15.0	45.0	40.0
□ 성 별					
남 자	(160)	12.5	19.4	34.4	33.8
여 자	(85)	23.5	21.2	23.5	31.8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67)	17.9	23.9	25.4	32.8
5년 이상	(69)	14.5	15.9	34.8	34.8
10년 이상	(67)	20.9	20.9	22.4	35.8
20년 이상	(42)	9.5	19.0	45.2	26.2

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4. 제4순위 분석

	사례수	P1R4			
		① 표현의 자유보장등 민주적사회 분위기조성	②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유가 능하게하는 경제적지원	③ 시민들의 예술활동향 유및접근권 확대	④ 예술교육 환경의조건 향상
		%	%	%	%
■ 전체	(248)	15.3	17.7	32.3	34.7
□ 장르별					
출판예술	(60)	11.7	16.7	35.0	36.7
시각예술	(61)	18.0	19.7	34.4	27.9
영상예술	(29)	3.4	27.6	20.7	48.3
공연예술	(96)	19.8	13.5	32.3	34.4
□ 연령별					
20대	(83)	15.7	19.3	33.7	31.3
30대	(96)	20.8	18.8	28.1	32.3
40대	(48)	8.3	14.6	29.2	47.9
50대 이상	(20)	5.0	15.0	50.0	30.0
□ 성별					
남자	(160)	17.5	16.3	31.3	35.0
여자	(85)	10.6	21.2	32.9	35.3
□ 창작기간					
5년 이하	(67)	13.4	26.9	31.3	28.4
5년 이상	(69)	18.8	14.5	24.6	42.0
10년 이상	(67)	17.9	14.9	35.8	31.3
20년 이상	(42)	7.1	11.9	40.5	40.5

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분석 - 우선순위 2개 선택]

	사례수	① 표현의 자유보장등 민주적사회 분위기조성	②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유가 능하게하는 경제적지원	③ 시민들의 예술활동향 유및접근권 확대	④ 예술교육 환경의조건 향상
		%	%	%	%
■ 전체	(262)	67.2	61.1	36.3	30.5
□ 장르별					
출판예술	(60)	80.0	61.7	28.3	30.0
시각예술	(67)	62.7	61.2	35.8	31.3
영상예술	(30)	83.3	56.7	40.0	16.7
공연예술	(103)	57.3	62.1	39.8	35.0
□ 연령별					
20대	(88)	65.9	50.0	43.2	35.2
30대	(100)	59.0	66.0	38.0	34.0
40대	(52)	75.0	67.3	34.6	15.4
50대 이상	(21)	90.5	66.7	4.8	33.3
□ 성별					
남자	(170)	68.2	62.9	33.5	30.0
여자	(89)	65.2	56.2	41.6	32.6
□ 창작기간					
5년 이하	(70)	70.0	47.1	41.4	37.1
5년 이상	(71)	64.8	67.6	40.8	23.9
10년 이상	(72)	59.7	63.9	40.3	30.6
20년 이상	(46)	78.3	67.4	13.0	32.6

문 2)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④ 중요하지 않다
		%	%	%	%	%
■ 전 체	(267)	85.0	14.6	99.6	.4	.4
□ 장 르 별						
출판 예술	(59)	89.8	10.2	100.0	.0	.0
시각 예술	(67)	86.6	13.4	100.0	.0	.0
영상 예술	(30)	83.3	16.7	100.0	.0	.0
공연 예술	(109)	81.7	17.4	99.1	.9	.9
□ 연 령 별						
20 대	(91)	83.5	16.5	100.0	.0	.0
30 대	(102)	84.3	14.7	99.0	1.0	1.0
40 대	(52)	88.5	11.5	100.0	.0	.0
50대 이상	(21)	85.7	14.3	100.0	.0	.0
□ 성 별						
남 자	(173)	87.3	12.1	99.4	.6	.6
여 자	(91)	81.3	18.7	100.0	.0	.0
□ 참 작 기 간						
5년 이하	(71)	84.5	15.5	100.0	.0	.0
5년 이상	(73)	86.3	13.7	100.0	.0	.0
10년 이상	(74)	83.8	14.9	98.6	1.4	1.4
20년 이상	(46)	87.0	13.0	100.0	.0	.0

문 3) 위 법률 중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1. 제1순위 분석

	사례수	P3R1							
		①국가 보안법	②청소 년보호 법	③음반 및비디 오및게 임물에 관한법	④영화 진흥법	⑤정보 통신망 이용촉 진및정 보보호 등에관 한법률	⑦종속 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⑧청소 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	
■ 전 체	(249)	75.9	8.4	6.8	2.4	2.0	2.4	2.0	
□ 장 르 별									
출판 예술	(58)	77.6	13.8	3.4	.0	3.4	.0	1.7	
시각 예술	(59)	88.1	3.4	.0	.0	3.4	3.4	1.7	
영상 예술	(29)	69.0	13.8	6.9	10.3	.0	.0	.0	
공연 예술	(101)	70.3	5.9	12.9	3.0	1.0	4.0	3.0	
□ 연 령 별									
20 대	(85)	61.2	10.6	10.6	5.9	3.5	4.7	3.5	
30 대	(96)	76.0	10.4	8.3	1.0	1.0	1.0	2.1	
40 대	(47)	93.6	2.1	.0	.0	2.1	2.1	.0	
50대 이상	(20)	100.0	.0	.0	.0	.0	.0	.0	
□ 성 별									
남 자	(160)	80.6	7.5	5.0	1.3	1.9	2.5	1.3	
여 자	(87)	67.8	9.2	10.3	4.6	2.3	2.3	3.4	
□ 참 작 기 간									
5년 이하	(69)	69.6	11.6	7.2	4.3	1.4	2.9	2.9	
5년 이상	(63)	69.8	9.5	9.5	3.2	3.2	1.6	3.2	
10년 이상	(69)	75.4	8.7	7.2	1.4	1.4	4.3	1.4	
20년 이상	(45)	95.6	.0	2.2	.0	2.2	.0	.0	

문 3) 위 법률 중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중복응답 분석

	사례수	①국가	②청소	③음반	④영화	⑤정보	⑥전기	⑦풍속	⑧청소	⑨학교	⑩형법
		보안법	년보호 법	및비디 오및계 임물에 관한법	진흥법	통신망 이용촉 진및정 보보호 등에관 한법률	통신 사업법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법	제243 조, 제 244조
		x	x	x	x	x	x	x	x	x	x
■ 전 체	(249)	86.3	44.2	53.4	34.5	25.7	4.4	18.5	13.7	2.0	5.2
□ 장 르 별											
출판 예술 (58)		89.7	53.4	51.7	32.8	31.0	1.7	10.3	13.8	.0	3.4
시각 예술 (59)		93.2	45.8	45.8	25.4	28.8	8.5	23.7	10.2	1.7	6.8
영상 예술 (29)		89.7	72.4	44.8	48.3	6.9	.0	10.3	13.8	3.4	10.3
공연 예술 (101)		80.2	28.7	60.4	37.6	26.7	5.0	22.8	14.9	3.0	4.0
□ 연 령 별											
20 대 (85)		78.8	47.1	52.9	34.1	28.2	1.2	23.5	22.4	3.5	3.5
30 대 (96)		85.4	46.9	51.0	32.3	25.0	6.3	17.7	12.5	1.0	4.2
40 대 (47)		97.9	42.6	53.2	38.3	27.7	8.5	14.9	.0	2.1	8.5
50대 이상 (20)		100.0	20.0	65.0	40.0	15.0	.0	10.0	10.0	.0	10.0
□ 성 별											
남 자 (160)		88.8	45.0	55.0	33.1	24.4	5.0	16.9	10.0	2.5	6.9
여 자 (87)		82.8	42.5	50.6	37.9	28.7	3.4	20.7	18.4	1.1	2.3
□ 참 작 기간											
5 년 이 하 (69)		84.1	56.5	44.9	37.7	23.2	.0	17.4	23.2	1.4	5.8
5 년 이 상 (63)		87.3	42.9	60.3	30.2	27.0	6.3	22.2	7.9	3.2	.0
10년 이 상 (69)		81.2	44.9	43.5	30.4	31.9	5.8	23.2	13.0	2.9	7.2
20년 이 상 (45)		97.8	24.4	68.9	44.4	17.8	6.7	8.9	6.7	.0	8.9

문 4) 위 법률 중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3개까지 중요도 순으로 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4-2. 중복응답 분석

	사례수	①국가	②청소	③음반	④영화	⑤정보	⑥전기	⑦풍속	⑧청소	⑨학교	⑩형법
		보안법	년보호 법	및비디 오및계 임물에 관한법	진흥법	통신망 이용촉 진및정 보보호 등에관 한법률	통신 사업법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법	제243 조, 제 244조
		x	x	x	x	x	x	x	x	x	x
■ 전 체	(242)	83.5	38.4	52.5	30.2	36.0	5.8	20.7	13.2	.4	5.8
□ 장 르 별											
출판 예술 (58)		87.9	53.4	58.6	24.1	39.7	1.7	15.5	12.1	.0	5.2
시각 예술 (57)		80.7	35.1	47.4	24.6	42.1	10.5	22.8	14.0	.0	3.5
영상 예술 (28)		78.6	71.4	50.0	32.1	25.0	14.3	3.6	10.7	.0	14.3
공연 예술 (97)		83.5	20.6	51.5	37.1	34.0	3.1	27.8	14.4	1.0	5.2
□ 연 령 별											
20 대 (82)		72.0	43.9	47.6	29.3	37.8	3.7	24.4	23.2	1.2	8.5
30 대 (95)		87.4	36.8	51.6	29.5	37.9	9.5	17.9	8.4	.0	2.1
40 대 (45)		88.9	33.3	60.0	31.1	35.6	4.4	24.4	6.7	.0	6.7
50대 이상 (19)		100.0	31.6	57.9	36.8	21.1	.0	10.5	10.5	.0	10.5
□ 성 별											
남 자 (154)		86.4	38.3	52.6	30.5	37.0	7.1	20.8	7.8	.6	6.5
여 자 (86)		77.9	38.4	52.3	30.2	34.9	3.5	20.9	23.3	.0	4.7
□ 참 작 기간											
5 년 이 하 (66)		78.8	48.5	45.5	28.8	33.3	6.1	21.2	21.2	.0	10.6
5 년 이 상 (63)		84.1	39.7	55.6	25.4	36.5	4.8	20.6	9.5	1.6	1.6
10년 이 상 (67)		85.1	37.3	50.7	28.4	35.8	7.5	25.4	11.9	.0	4.5
20년 이 상 (43)		86.0	20.9	58.1	41.9	41.9	4.7	14.0	9.3	.0	7.0

문 5) 귀하께서는 작품 창작과 유통시 위 법률에 저촉된 적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P5			
		① 0 번	② 1 번	③ 2 번	④ 3번이상
		%	%	%	%
■ 전 체	(246)	79.7	10.6	4.9	4.9
□ 장 르 별					
출판 예술	(55)	80.0	12.7	1.8	5.5
시각 예술	(61)	70.5	13.1	11.5	4.9
영상 예술	(28)	78.6	14.3	3.6	3.6
공연 예술	(101)	85.1	6.9	3.0	5.0
□ 연 령 별					
20 대	(86)	94.2	4.7	.0	1.2
30 대	(95)	80.0	9.5	4.2	6.3
40 대	(47)	61.7	19.1	12.8	6.4
50대 이상	(17)	52.9	23.5	11.8	11.8
□ 성 별					
남 자	(154)	74.7	13.6	7.1	4.5
여 자	(88)	87.5	5.7	1.1	5.7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70)	97.1	2.9	.0	.0
5 년 이 상	(65)	80.0	13.8	1.5	4.6
10년 이 상	(69)	76.8	10.1	7.2	5.8
20년 이 상	(40)	52.5	20.0	15.0	12.5

문 6)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위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저촉되었습니까? 법률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분석 - 2개 선택]

	사례수	①국가	②청소	③음반	④영화	⑥전기	⑦종속	⑧청소	⑩형법	⑪공연
		보안법	년보호	및비디	진흥법	통신	영업의	년의성	제243	법
			법	오및게		사업법	규제에	보호에	조, 제	
				임들에		관한	관한	244조		
		%	%	관한법	%	법률	법률		%	%
■ 전 체	(31)	74.2	3.2	12.9	6.5	3.2	9.7	3.2	3.2	3.2
□ 장 르 별										
출판 예술	(5)	100.0	.0	.0	.0	.0	.0	.0	.0	.0
시각 예술	(9)	77.8	.0	.0	.0	11.1	.0	11.1	11.1	.0
영상 예술	(5)	60.0	20.0	20.0	40.0	.0	.0	.0	.0	20.0
공연 예술	(12)	66.7	.0	25.0	.0	.0	25.0	.0	.0	.0
□ 연 령 별										
20 대	(4)	75.0	25.0	.0	.0	.0	.0	.0	.0	.0
30 대	(12)	58.3	.0	25.0	8.3	.0	16.7	.0	.0	8.3
40 대	(12)	83.3	.0	8.3	8.3	8.3	8.3	8.3	8.3	.0
50대 이상	(3)	100.0	.0	.0	.0	.0	.0	.0	.0	.0
□ 성 별										
남 자	(23)	65.2	4.3	17.4	8.7	4.3	8.7	4.3	4.3	4.3
여 자	(8)	100.0	.0	.0	.0	.0	12.5	.0	.0	.0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1)	100.0	.0	.0	.0	.0	.0	.0	.0	.0
5 년 이 상	(8)	62.5	12.5	.0	12.5	.0	12.5	.0	.0	12.5
10년 이 상	(11)	63.6	.0	27.3	9.1	9.1	18.2	9.1	.0	.0
20년 이 상	(11)	90.9	.0	9.1	.0	.0	.0	.0	9.1	.0

문 7)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어떤 제재를 받으셨습니까?

	사례수	P7		
		②집행유예	③기소유예 처분	④ 조사 후 훈방
		%	%	%
■ 전 체	(28)	21.4	7.1	71.4
□ 장 르 별				
출판 예술	(5)	60.0	20.0	20.0
시각 예술	(9)	.0	.0	100.0
영상 예술	(4)	25.0	25.0	50.0
공연 예술	(10)	20.0	.0	80.0
□ 연 령 별				
20 대	(3)	.0	.0	100.0
30 대	(10)	20.0	10.0	70.0
40 대	(9)	22.2	11.1	66.7
50대 이상	(6)	33.3	.0	66.7
□ 성 별				
남 자	(22)	27.3	9.1	63.6
여 자	(6)	.0	.0	100.0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1)	.0	.0	100.0
5년 이상	(6)	.0	16.7	83.3
10년 이상	(9)	22.2	11.1	66.7
20년 이상	(12)	33.3	.0	66.7

문 8) 위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사례수	P8			
		①작품물수	②작품유통 금지	③작품에 대한훼손	④기타제재
		%	%	%	%
■ 전 체	(31)	3.2	45.2	12.9	38.7
□ 장 르 별					
출판 예술	(4)	.0	25.0	25.0	50.0
시각 예술	(9)	.0	55.6	.0	44.4
영상 예술	(5)	20.0	60.0	.0	20.0
공연 예술	(13)	.0	38.5	23.1	38.5
□ 연 령 별					
20 대	(4)	25.0	25.0	25.0	25.0
30 대	(14)	.0	64.3	7.1	28.6
40 대	(8)	.0	25.0	25.0	50.0
50대 이상	(5)	.0	40.0	.0	60.0
□ 성 별					
남 자	(24)	4.2	50.0	4.2	41.7
여 자	(7)	.0	28.6	42.9	28.6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1)	.0	.0	.0	100.0
5년 이상	(10)	10.0	50.0	20.0	20.0
10년 이상	(8)	.0	62.5	12.5	25.0
20년 이상	(12)	.0	33.3	8.3	58.3

문 9) 공권력에 의한 제재이외에 창작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P9	
		① 예	② 아니오
		%	%
■ 전 체	(213)	26.3	73.7
□ 장 르 별			
출판 예술	(47)	31.9	68.1
시각 예술	(47)	40.4	59.6
영상 예술	(24)	25.0	75.0
공연 예술	(93)	17.2	82.8
□ 연 령 별			
20 대	(73)	12.3	87.7
30 대	(82)	24.4	75.6
40 대	(44)	47.7	52.3
50대 이상	(13)	46.2	53.8
□ 성 별			
남 자	(130)	32.3	67.7
여 자	(80)	17.5	82.5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55)	1.8	98.2
5년 이상	(57)	29.8	70.2
10년 이상	(65)	33.8	66.2
20년 이상	(33)	48.5	51.5

문 9-1)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으셨습니까?

	구 성	
	사례수	%
■ 전 체	40	100.0%
특정 집단에 의한 협박	9	22.5%
편집국장(상사)의 강요	4	10.0%
사법처리 하겠다는 위협	3	7.5%
보수단체 들 의 지면비난	3	7.5%
고등 학교 재학시 학생부의 협박	2	5.0%
80년대에 민중 예술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	2	5.0%
대학교의 교육방식	2	5.0%
공연장 사용 불허	2	5.0%
경찰에 의한 전시 취소압력 / 작품탈취	2	5.0%
방 송심 의	2	5.0%
전화 도청 / 감시	1	2.5%
매일	1	2.5%
학부모 교육청	1	2.5%
경제적 구속 / 제약	1	2.5%
대본 심사	1	2.5%
공연시 시끄럽다는 비난	1	2.5%
음반 유통 제작	1	2.5%
현대 미술제 출품작 철거	1	2.5%
안기부	1	2.5%

문 10) 귀하는 작품 창작시 위 법률 등의 저촉여부를 고려해 작품기획을 재조정
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P10	
		① 예	② 아니오
		%	%
■ 전 체	(226)	35.0	65.0
□ 장 르 별			
출판 예술	(54)	51.9	48.1
시각 예술	(47)	23.4	76.6
영상 예술	(28)	17.9	82.1
공연 예술	(95)	34.7	65.3
□ 연 령 별			
20 대	(78)	17.9	82.1
30 대	(89)	39.3	60.7
40 대	(44)	47.7	52.3
50대 이상	(14)	57.1	42.9
□ 성 별			
남 자	(142)	44.4	55.6
여 자	(81)	18.5	81.5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62)	24.2	75.8
5년 이상	(61)	29.5	70.5
10년 이상	(67)	40.3	59.7
20년 이상	(34)	50.0	50.0

문 11) 그렇다면 창작시 영향을 받는 법령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P11										전 체
		① 국가 보안법	② 청소 년보호 법	③ 음반 및비디 오및게 임물에 관한법	④ 영화 진흥법	⑤ 정보 통신망 이용촉 진및정 보보호 등에관 한법들	⑦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법 률	⑧ 청소 년의성 보호에 관한법 률	⑨ 학교 보건법	⑩ 형법 제243 조, 제 244조	*	
		%	%	%	%	%	%	%	%	%	%	
■ 전 체	(70)	65.7	12.9	4.3	2.9	1.4	8.6	1.4	1.4	1.4	100.0	
□ 장 르 별												
출판 예술	(26)	69.2	23.1	.0	.0	3.8	.0	3.8	.0	.0	100.0	
시각 예술	(10)	70.0	10.0	.0	.0	.0	10.0	.0	.0	10.0	100.0	
영상 예술	(4)	75.0	25.0	.0	.0	.0	.0	.0	.0	.0	100.0	
공연 예술	(28)	57.1	3.6	10.7	7.1	.0	17.9	.0	3.6	.0	100.0	
□ 연 령 별												
20 대	(12)	58.3	25.0	.0	.0	.0	8.3	8.3	.0	.0	100.0	
30 대	(31)	48.4	19.4	6.5	3.2	3.2	16.1	.0	3.2	.0	100.0	
40 대	(19)	84.2	.0	5.3	5.3	.0	.0	.0	.0	5.3	100.0	
50대 이상	(7)	100.0	.0	.0	.0	.0	.0	.0	.0	.0	100.0	
□ 성 별												
남 자	(55)	61.8	14.5	5.5	3.6	1.8	10.9	.0	.0	1.8	100.0	
여 자	(14)	78.6	7.1	.0	.0	.0	.0	7.1	7.1	.0	100.0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14)	57.1	28.6	.0	.0	7.1	.0	7.1	.0	.0	100.0	
5년 이상	(15)	60.0	20.0	13.3	.0	.0	6.7	.0	.0	.0	100.0	
10년 이상	(23)	52.2	8.7	4.3	8.7	.0	21.7	.0	4.3	.0	100.0	
20년 이상	(16)	93.8	.0	.0	.0	.0	.0	.0	.0	6.3	100.0	

문 12) 현행 법률들은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에 대해 영화진흥법은 만 18세 미만 그리고 선거법은 만 20세 이상인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해 모두 제각각인 연령기준을 단일화한다면 귀하께서는 몇 세까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12				
		① 만 18세 미만	② 만 19세 미만	③ 만 20세 미만	④ 만 24세 미만	⑤ 기타
		%	%	%	%	%
■ 전 체	(245)	55.1	30.2	12.2	.4	2.0
□ 장 르 별						
출판 예술	(55)	52.7	30.9	12.7	.0	3.6
시각 예술	(59)	55.9	30.5	13.6	.0	.0
영상 예술	(29)	75.9	6.9	6.9	.0	10.3
공연 예술	(100)	51.0	35.0	13.0	1.0	.0
□ 연 령 별						
20 대	(83)	49.4	32.5	16.9	1.2	.0
30 대	(95)	60.0	26.3	9.5	.0	4.2
40 대	(47)	57.4	31.9	10.6	.0	.0
50대 이상	(19)	52.6	31.6	10.5	.0	5.3
□ 성 별						
남 자	(157)	50.3	31.8	14.6	.0	3.2
여 자	(85)	65.9	24.7	8.2	1.2	.0
□ 참 작 기 간						
5년 이하	(66)	53.0	25.8	16.7	1.5	3.0
5년 이상	(67)	61.2	31.3	6.0	.0	1.5
10년 이상	(67)	55.2	26.9	16.4	.0	1.5
20년 이상	(42)	52.4	35.7	9.5	.0	2.4

■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문 13)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의 순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13			
		①반국가활동을통제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	②국민의생존및자유보장	③사회의안정화	④순기능을하였다곤불수없다
		%	%	%	%
■ 전 체	(260)	13.8	6.9	5.4	73.8
□ 장 르 별					
출판 예술	(58)	5.2	5.2	6.9	82.8
시각 예술	(65)	12.3	9.2	4.6	73.8
영상 예술	(29)	6.9	10.3	6.9	75.9
공연 예술	(106)	21.7	5.7	3.8	68.9
□ 연 령 별					
20 대	(89)	18.0	6.7	7.9	67.4
30 대	(100)	13.0	6.0	4.0	77.0
40 대	(51)	9.8	9.8	2.0	78.4
50대 이상	(19)	10.5	5.3	5.3	78.9
□ 성 별					
남 자	(164)	12.8	5.5	6.1	75.6
여 자	(92)	16.3	9.8	3.3	70.7
□ 참 작 기 간					
5년 이하	(71)	8.5	9.9	5.6	76.1
5년 이상	(71)	15.5	5.6	5.6	73.2
10년 이상	(72)	19.4	5.6	4.2	70.8
20년 이상	(43)	11.6	7.0	4.7	76.7